#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27 발의연월일: 2025. 2. 13.

발 의 자:조인철・이개호・주철현

이해민 • 이훈기 • 임호선

정진욱 • 박해철 • 허성무

이건태 • 박용갑 • 한정애

김 윤 • 박수현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8세"를 각각 "24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18세"를 각각 "24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u>18세</u> 미만의 자	위한 감면) ① <u>24세</u>
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	
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	
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	
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	
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u>18세</u>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24세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	
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	
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	
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	
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 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 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 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 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 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략)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제1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
<u>24세</u>
1. ~ 4. (현행과 같음)
② <u>24세</u>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 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 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 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 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 ⑤ (생 략)

<u>24세</u>
③ ~ ⑤ (현행과 같음)